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39
----------	-----

2022년 12월 20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0월 17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15회 정례회 제9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22년 12월 20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최진석 안전총괄실장)

- 가. 제안이유
  -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(2022.12.31.) 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 -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    -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(2022.9.8. ~ 9.28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# 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한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2027년 12월 31일----- . ----- ----- ----- -----.

- 기금이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1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2)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으로,
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게 되며, 동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.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 
 2)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 
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또한,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바, 본 조례개정안은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
**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**

**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시도(市道)의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「도로법」 제91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음.

**「도로법」**

**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**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·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.
-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**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**

- 제3조 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)**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「도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(이하 "원인자부담금"이라 한다)을 징수한다.
-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율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,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,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,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.
-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.

-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, 평균 운용규모는 531억 2천만원으로 연간 수입액 356억 8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4억 33백만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, 평균 지출액은 345억 26백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비,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,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·연구·감독업무,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.

[표] 최근 3년(2019~2021)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전년도 이월액 (가)	당해연도 증감액			다음년도 이월 액(예치금) (마)=(가)+(나)	운용규모 (바)=(가)+(다)
		계 (나)=(다)-(라)	당해연도 수입액 (다)	당해연도 지출액 (라)		
2019	14,490	3,581	40,486	36,905	18,071	54,976
2020	18,071	1,667	33,120	31,453	19,738	51,191
2021	19,738	△1,764	33,455	35,219	17,974	53,193
평균	17,433		35,687	34,526	18,594	53,120

- 2018년 1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으로 상·하수도, 전력시설물, 전기통신설비, 가스공급시설,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서울시가 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정비해야 할 노후 지하시설물의 물량이 증가하였으며,
- 이에 기금의 굴착복구공사 지출규모 또한 법 시행 이전과 비교<sup>3)</sup>해 크게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지출액 중 평균 굴착복구공사비는 335억 9천만원으로 기금 지출액의 97.3%에 해당함.

[표] 최근 3년(2019~2021)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계	도로굴착복구공사	시스템개발 및 유지운영	행정운영경비
2019년	36,905,158	36,672,792	231,416	950
2020년	31,453,090	30,580,017	869,449	3,624
2021년	35,218,907	33,518,395	1,699,352	1,160
평균	34,525,719	33,590,401	933,406	1,911

3) 2014년~2018년 굴착복구공사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4년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	2018년도	평균
지출액	23,313	24,268	24,029	25,163	31,018	25,558
굴착복구공사	22,953	23,818	23,805	24,962	30,873	25,282
시스템 유지운영 등	360	450	224	201	145	276
예치금	15,824	17,265	16,470	13,451	14,491	15,500
운영규모	39,137	41,533	40,500	38,614	45,508	41,058

- ‘시스템개발 및 유지운영’은 도로 굴착공사의 신청, 허가, 준공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·운영을 위한 것으로 ’20년도부터 기금 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.
- 시스템이 ’05년도에 개발되어 시스템의 노후화로 호환성 및 연계성 부족 등의 사용자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‘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(도로관리과-3266, 2019.2.)’의 일환으로 ‘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용역’과 ‘도로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’을 실시함에 따른 것으로 ’22년 12월 준공예정임.

□ **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용역**

- 내 용: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응용시스템 구축 등
- 기 간: ’20.12.23. ~ ’22.12.12.
- 계약금액: 2,551백만원

□ **도로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**

- 내 용: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
- 기 간: ’21.1.1.. ~ ’22.12.31.
- 계약금액: 1,196백만원

- 최근 3년 평균 기금 예치금은 185억 94백만원으로 ’21년도 기금 지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예치금이 다소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큰 변동없이 예치금을 유지하고 있어 기금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됨.
-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을 확인해보면, 도로굴착복구공사 지출규모는 339억 51백만원이고 일반 예치금은 188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 지출현황과 비교하여 큰 변동이

없을 것으로 예상됨.

[표]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(안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수 입	구 분	지 출	주요내용
운용규모	52,752	운용규모	52,752	
수입합계	35,440	지출합계	33,951	
원인자부담금	35,000	도로굴착복구공사	33,736	
이자수입	440	시설비(직접복구비)	28,500	관리청 직접복구공사
( 이 하	여 백)	시설비(사후정비비)	3,500	간접손계구간 재정비
		감리비	1,700	건설사업관리용역
		시설부대비	36	굴착복구업무 부대경비
		시스템개발 및 유지운영	200	
		공공운영비	200	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
		행정운영경비	15	
		사무관리비	15	심의 및 자문수당 등
예치금 회수	17,312	일반예치금	18,801	

- 도로굴착은 상하수도·가스·통신 등 지하매설물의 신설, 개축, 변경 또는 제거 등의 사유로 연간 3만 여건에 달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물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고유한 목적(굴착 복구 및 사후관리) 달성을 지속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.

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(2022.12.31.) 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
-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(2022.9.8. ~ 9.28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      호

##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의 본문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 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 12월 31</u> 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 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 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 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.	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

#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종료 예정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내용 일부 개정으로, 추계 작성이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.

### 4. 작성자

- 도로관리과 주무관 박운학(02-2133-8145)